용인시 특별보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12. 8. 28 훈령 제334호
일부개정 2012. 12. 11 훈령 제340호
일부개정 2021. 11. 15 훈령 제499호(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시정 주요정책 결정과 관련 용인시장의 자문을 위해 용인시 특별보좌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21. 11. 15〉

제2조(기능) 용인시 특별보좌관(이하 “특별보좌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〈개정 2021. 11. 15〉

1. 시정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정책개발
2. 중앙부처 협력관계 구축 및 정책자문
3. 지역개발·주민복지 등 지역현안 해소방안
4.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특별보좌관은 시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② 특별보좌관은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정책, 정무, 경제, 특정현안 분야 등에 위촉할 수 있다.〈개정 2021. 11. 15〉

제4조(임기)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(수당 등) 특별보좌관의 자문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〈개정 2021. 11. 15〉

제6조(자료제출 및 협조요구)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특별보좌관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

에 협조할 수 있다.〈개정 2012. 12. 11〉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2. 12. 11 훈령 제340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1. 11. 15 훈령 제499호,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